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(경북)라온저축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14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-
임원	주의적경고 1명
직원등	퇴직자 위법 부당사항(건책상당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

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22조의2, 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」 제11조의7, 「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」 제36조 및 제38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·유지 하여야 하고, 「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」 제24조의2 및 [별표 1]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,

(경북)라온저축은행은 2025.9월말 기준 결산 시 A 등 10개 차주에 대한 대출 11건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부실징후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 등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함에 따라,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2.15%p 과대 산정하였다.

< 관련규정 >

1.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제22조의2
2. 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」 제11조의7
3.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 제36조, 제38조, <별표 7>
4. 「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」 제24조의2